

이슈페이퍼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 오혁제

이슈페이퍼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 오혁제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¹⁾ · 오혁제²⁾

〈목 차〉

I. 연구 배경 및 범위	2
II. 우리나라 자격제도 특징 및 민간자격제도	4
III. 민간자격 추진 현황 및 시사점	8
IV. 민간자격제도 설문조사 결과	14
V. 정책제언 및 추진전략	19
참고문헌	23
[부록]	26

「자격기본법」에 의거 2000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가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등록 민간자격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4년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민간자격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종목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한 후 중단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적 측면의 제도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단기적 개선방안의 경우 등록제도는 등록금지 분야의 사전고지, 등록증 발급을 등록번호 부여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부처의 사전적 심사기능 강화,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량적 평가 도입, 공인기준의 수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 전략으로는 민간 자격 금지분야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사전등록의 실효성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 주제어: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shkim@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E-mail: ohhj@krivet.re.kr)

I. 연구 배경 및 범위

우리나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민간자격 가운데 심사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등록제도는 2007년 10월 28일 이후 실시되었으며, 2013년 10월 6일부터 등록제도가 사후등록에서 사전등록으로 변경되었다. 공인제도의 경우, 당초 우수한 민간자격증을 발굴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을 통한 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정표 외(2007)는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목적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자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대국민 정보 제공, 둘째, 등록제도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제한, 셋째,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연수 제공이다. 이외에도 민간자격의 사후등록과 유효기간 설정, 민간자격의 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제도는 이보다 완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되어 신고제와 유사한 형태이다.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미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민간자격이 폭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비 등록과 본 등록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검정 미시행 자격 종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소관부처 선정 지연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당초 파악되지 못했던 민간자격이 일시적으로 드러나 발생하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항구적 검정에 기초한 검정 자격증(certification)의 등록 외에 비항구적 교육훈련에 기반을 둔 인증(accreditation) 등이 사전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민간자격 사전등록이 자격의 질 관리, 신호기능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는 순기능 외에 사전등록을 통한 교육훈련 시장의 선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즉,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는 우수한 민간자격의 사전적 발굴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질 관리, 무분별한 자격증 난립에 대한 스크린(screen) 등의 순기능과 함께 정보 잡음(information noises) 우려, 시장기능 저하, 행정력 소모 등의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 많은 자격 종목들이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등록지연, 상담폭증, 부처 간의 주무부처 선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격 등록은 검정기관의 시장선점, 홍보수단 외에도 국가공인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공인제도는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기술이나 직무분야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신속히 대응하여 인력 양성, 직업능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국가가 모든 분야에 신속하게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의 한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과 공공과 민간의 선의 경쟁을 통한 자격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초 공인민간자격이 배출된 이후 대략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자격 종목 수는 95개에 불과하며, 공인 민간자격의 상당수는 기초소양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기본법」 제1조의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공인민간자격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심사 및 평가방법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 및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서류 및 문서중심의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실제 검정 시행 및 결과보다 형식적 체계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공인제도가 가진 한계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범위는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이나 효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 문제의 개선과 장기적 전략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최근 시행된 사전등록에 따른 자격의 등록 폭증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현행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시행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시하며, 셋째, 등록 및 공인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그리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이다.

동 연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³⁾으로 원내 행정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등록 및 공인 제도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공인민간자격 검정기관 및 등록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제한된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민간 자격 검정기관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지면관계 상 일부만 제시하고 자세한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함.

II. 우리나라 자격제도 특징 및 민간자격제도

1. 우리나라 자격체제 및 특징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일본과 가장 유사하다. 반면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제도 근간 및 자격체제가 많이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교육 훈련보다 검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 Competency Standards)의 도입 및 확산으로 검정 기반에서 교육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은 검정 기반이 골자임은 분명하다. 둘째, 중앙집권적이면서 국가주도적인 자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개별부처의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제도, 등록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우리나라 자격 현황 표를 살펴보면, 국가자격보다 민간자격 종목 수가 월등히 많으나, 응시인원 및 노동시장 통용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국가자격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그 예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국가만이 검정 주체로 설정되어, 민간자격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이 있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도 많으며,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를 포함해 기술을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다.

<표 2-1> 우리나라 자격 현황(2014. 10. 8 기준)

(단위 : 개)

구분	자격 수	관련 법	자격 종류(예)	
국가 자격	개별법 상 국가자격*	149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 기술자격	525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소계	674	-	-
민간 자격	공인 민간자격	95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4개 부처)	인터넷정보검색사, TEPS 등
	등록 민간자격	11,565**	「자격기본법」 (주무부 장관)	학교폭력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등
	소계	11,565	-	-

* 개별법상 국가자격의 수는 149개이며, 종목 수로 보면 708종목임.

**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민간자격 수는 공인민간자격 수를 포함.

※ 사업내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며, 122개 종목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자료.

2. 국가 및 민간의 역할분담과 금지분야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조항이 많다. 대표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개별 법령 등을 통해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에서는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민간자격 신설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은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에서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볼 수 있다. 「자격기본법」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존재하였고, 금지분야의 경우 자격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의 범리를 상당수 준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은 1974년 7월 1일 제정된 법으로 제조업 분야 중심이며, 경제개발 초기에 제정된 법이기에 서비스 산업 및 융합경제시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금지분야이다. 기술이 융합되면서, 과거처럼 명확하게 금지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고, 금지를 통해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분야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포괄적 또는 광의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법」의 금지분야 가운데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추상적 용어

와 윤리가 개입되어 금지분야 여부를 더욱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외에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기초사무 분야를 국가기술 분야로 인정하여 기술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케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자격 신설 및 검정과 관련한 모호한 규정은 금지분야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 박종성 외(2008)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판단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들의 사회활동에 있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금지분야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설되는 수백에서 수천 건의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금지 여부를 개별 부처가 판단해야 되므로,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등록 신청자의 등록지연에 대한 민원, 등록 불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금지분야를 완화하고 있다.⁴⁾ 그 예로, 2014년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교량, 터널), 하천(제방·하천), 사방(사방설비, 산사태 방지시설, 급경사면 붕괴시설), 해안(해안제방), 하수도(관로시설), 항만(항만시설), 공항(공항시설), 공원(공원시설)의 8개 분야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해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전등록과 달리 등록기관의 요건, 등록 유효기간, 평가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만이 검정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의 신설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의 민간자격 등록은 신고에 가까운 개념이며, 일본은 한국의 공인제도와 같은 엄격한 범주의 등록제도를 준비하고 있다.⁵⁾

4) 일본의 경우 1999년 규제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대대적으로 업무 독점자격, 필치자격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공적자격의 폐지 등을 통해 금지분야를 축소하고 민간자율기능을 강화함.

5)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4년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신설하기로 함. 노후화 시설의 증가와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정비에 따라, 향후 점검·진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기존의 민간자격을 긴급히 활용기로 함. 즉, 기존의 민간자격을 평가하여 필요한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등록하는 제도를 구축한 후, 이들 민간자격 취득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신설분야는 도로나 하천 등의 8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이 독자적으로 창설한 점검·진단 자격을 국토교통성이 엄정하게 심사한 후 보증함. 따라서 등록에 있어서 엄격한 평가절차와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http://www.mlit.go.jp/common/001051836.pdf>

3. 민간자격의 사전등록의 규제성

현행 등록제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신고제와 유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금지분야의 경우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즉 포지티브 규제방법과 네거티브 규제방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 최근 기술 및 직무의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금지여부의 임계선 상에 있는 민간자격 종목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신설예정인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검정과목, 자격명칭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적 측면에서 금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자리 창출 제한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타당성이 있으나,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검정(시험이나 테스트)을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정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은 당연히 필요하고 인정하나, 자격증 부여를 위한 검정행위는 무자격 불법 시술행위자가 양성될 수 있으므로 민간부분은 검정행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검정기관은 자신들의 행위가 금지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부 부처의 경우 금지분야를 사전에 고시하지 않으므로, 민간부분은 금지분야 해당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의 사전 고시가 확대될 경우 문제는 완화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직업규제와 관련한 개별 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제도의 실익을 분석한 후, 신고제도 등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6)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면허 등의 비교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Ⅲ. 민간자격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 등록제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가.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 교재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통한 사전적 예방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민간자격의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2007.4.27 법률 제8390호)을 통해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초 등록 기본요건은 1회 검정이었으나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검정기관이 금지분야인지 알지 못하고 검정을 시행하여 등록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간자격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2013.4.5, 법률 제11722호)해 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기존 1회 검정요건을 폐지하고, 예비등록과 본 등록을 없애고 사전등록을 실시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많은 자격종목들이 등록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민간자격(인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008년에 6,368건⁷⁾인 반면, 2013년에는 1,558건으로 나타나는 등 민간자격의 양적 성장에 비해 소비자 피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포털 상 민간자격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는 9건에 불과하며, 중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건의 사례가 1건, 규제개혁위원회 민원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사전등록된 민간자격 규모와 검정기관 수를 감안할 때, 민원 건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자격운영기관이 허위 및 과장 광고, 교재 부당판매, 금지분야 자격 신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모두가 선량한 민원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부록 1] 참조).

7) 피해상담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사례 과반수가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관련으로 교육비 외에 교재비, 회원가입비, 보수교육비, 심사비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초계약과 다른 부당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임.

<표 3-1>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단위: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등록자격 수	638	1,016	1,541	2,579	4,030	6,773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6,368	5,909	2,094	1,517	1,162	1,558

* 자료: 한국 소비자원 내부자료

3절에서는 민간자격 사전등록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된 5,556개의 자격을 전수 조사하였다. 상기 데이터는 등록, 등록불가, 미회신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원 자료(raw dat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원 자료는 미 가공 상태이므로 개별 자격 하나하나에 대해 직업자격인지 소양자격인지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원 자료를 활용할 경우 등록여부, 신청 상태, 등록불가, 주무부처 등의 현황은 파악되지만, 신청자격의 직업 여부, 공공성이 높은 자격 분야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동 변수의 생성을 위한 분류기준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사전등록 민간자격 분석자료 설명(변수 생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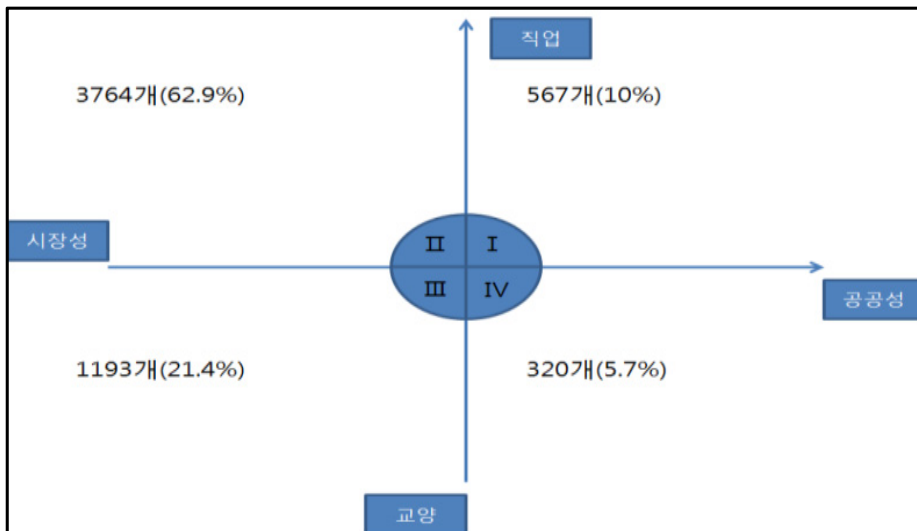
1차 분류	2차 분류
직업/교양/기타로 구분	시장성/공공성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으로 분류 - 직업명이 명시된 자격 → ‘직업’ - 직업과 직접적 관련성 있는 자격 → ‘기타’ - 이 외 자격 → ‘교양’ <p>⇒ 1, 2분면과 3, 4분면으로 구분([그림3-1]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사회 복지·종교, 환경·에너지·안전 → ‘공공성’ (그 외의 경우는 시장성으로 판단) - 보건·의료의 경우 자격이 복지, 국민건강, 중독, 폭력 등과 관계있는 경우 → ‘공공성’ - 교육·자연·사회과학의 경우 교육이 복지, 국민건강, 중독, 폭력 등과 관계있는 경우 → ‘공공성’

나. 등록제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14년 상반기에 등록 신청된 민간자격을 앞서 제시한 분류방법에 따라 직업자격과 교양자격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이 높은 민간자격과 시장자율성이 높은 민간자격으로 유형을 구분해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자격의 규모와 교양자격의 시장 규모,

금지분야와 관련한 민간자격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첫째, 시장성과 직업적 측면에 치중되어 2분면(62.9%)과 3분면(21.4%)이 전체의 84.3%에 해당한다. 둘째, 기초소양과 관련한 교양자격의 경우 1,513개(27.1%)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자격 중 1, 4분면의 15.7%가 등록불가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하였으며, 상당수 시장 자율성과 관련된 직업자격의 경우 앞서 제기된 금지분야의 포괄적 적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등록 금지 판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등록불가된 민간자격 5종목 가운데 1종목은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분면(II)과 3분면(III)상에서 발생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등록 신청된 민간자격 유형



사전등록제도 시행으로 등록민간자격 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전등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 이후 등록민간자격은 폭증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0월 8일 기준 등록폐지 건수는 209개에 불과하다. 이는 상당수 검정기관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도 폐지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격증에 대한 등록이 아니라 교육인증(accreditation)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이후 등록자격은 사전등록으로 사후등록 때보다 폐지신청이 증가하겠지만, 등록 유효기간이 없는 현 제도 하에서 실제로 등록 폐지되는 민간자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운영하지 않는 등록민간자격 종목이 많아질 경우에는 시장의 혼란, 정보 잡음 (information noises)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

<표 3-3> 등록민간자격(2014. 10. 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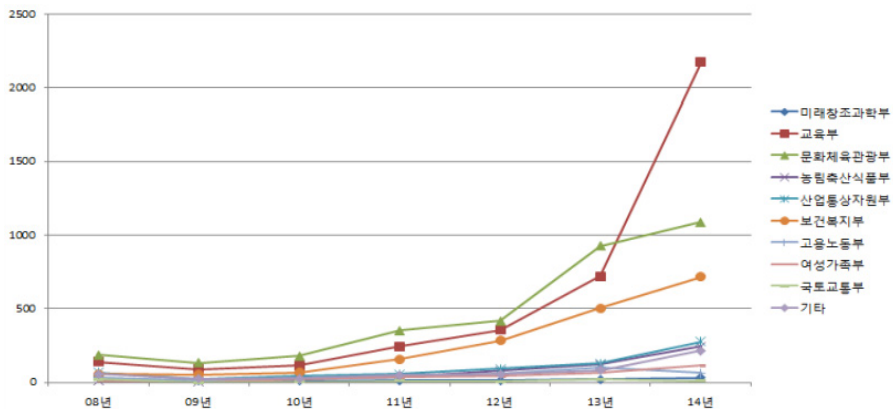
연도	접수	등록	등록 폐지
2008	304개 기관 829개 종목	265개 기관 655개 종목	33개 종목
2009	189개 기관 561개 종목	142개 기관 380개 종목	26개 종목
2010	249개 기관 736개 종목	227개 기관 539개 종목	14개 종목
2011	484개 기관 1,141개 종목	398개 기관 1,053개 종목	52개 종목
2012	680개 기관 1,909개 종목	497개 기관 1,453개 종목	36개 종목
2013	1,015개 기관 3,590개 종목	757개 기관 2,748개 종목	44개 종목
2014	1,865개 기관 8,205개 종목	1,317개 기관 4,946개 종목	4개 종목
계	16,971개 종목	2,662개 기관* 11,565개 종목**	209개 종목

* 기 등록된 기관 중 재신청 기관을 제외한 총계임.

** 등록 폐지 종목을 제외한 총계임.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 민간자격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자격종목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2]를 살펴보면, 사전등록 시행 이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등록 민간자격이 검정형식의 민간자격이 아니라 인증 형식의 민간자격이 급증했다는 추론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다. 즉 사전등록이 시행되면서 항구적 검정이 아닌 단발성 시험을 통한 인증 형태의 민간자격이 대거 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관된 인증증서가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의 「자격기본법」은 검정자격증과 교육연계형 인증증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인증(accreditation)이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규정과 지도 점검에 불안을 느끼고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연도·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2. 공인제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가. 공인제도 개요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이 파악되는 2009년~2012년 검정 통계를 살펴보면 신청자는 무려 9,219천 명이며, 3,042천 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황 파악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규모는 천만 명⁸⁾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제도는 점역교정사,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네트워크관리사, 세무회계 등과 같이 국가의 시장개입이 어려운 분야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우수 민간자격 종목을 발굴하였다. 이 연구는 공인제도 시행 15년이 된 시점에서 공인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록제도의 경우 사전등록 제도시행 초기로 현 법령과 관리능력에 비춰 볼 때 추진 현황을 파악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공인제도의 경우 15년간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자료 외에 공인 민간자격 통계연보, 연차별 사업보고서,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2013년 공인 민간자격 통계연보의 경우 부처별 자격취득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⁹⁾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공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민간자격 공인제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주무부처가 공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청 접수와 조사 및 심사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가 최종적으로 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4년 기준 58개 기관의 95개 종목이 15개 정부부처로부터 공인되어 운영되고 있다.

8)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상당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만 명의 개념은 천만 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으나, 독자의 가독성 측면에서 명으로 표기함.

9) 개별 부처의 국가자격 관리 실태 및 민간자격에 대한 주요 국가의 관리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정보, 취득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검정 기반의 자격체제 하에서 공인자격과 유사한 공적 자격을 운영 하고 있지만, 취득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

<표 3-4>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단위: 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공인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8	65	62	61	68*	1,297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5	-	116
취소 및 기간종료	-	-	-	1	-	1	-	1	-	-	1	13	2	1	1	21
공인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6	95	-

* '14년도는 현재 공인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정치임.

현재 민간자격 공인의 조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기준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에서 동일하게 활용된다. 제도 도입 당시 적용된 기준의 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22개 세부 평가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 세세항목과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공인심사기준은 자격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되며, 검정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서류 구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는 심사기준이 정성적 기준과 평가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행정력 소모, 소수의 심사자 평의에 의존하는 등의 한계성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인기준에 있어서 자격의 필요성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공인자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기초소양 자격종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초소양 자격이 활성화될 경우 직업적 활용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계층의 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유발될 우려도 있다.¹⁰⁾

<표 3-5> 현행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 기준(서류 및 현장 조사 동일)

영역	항목	세부 평가항목
2.1. 민간자격 관리 운영체제(자격설계 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1. 운영 목적, 2. 자격의 활용도
	2.1.2. 자격체계의 적합성	1. 검정 기준, 2. 검정 방법, 3. 검정 과목 4. 응시 자격
2.2 민간자격 관리 운영체제(검정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1. 출제기준, 2. 문제의 적절성, 3. 출제절차 및 보안, 4. 채점기준 및 절차 5. 채점관리
	2.2.2. 검정시행의 적합성	1. 검정계획 및 실행 절차, 2. 시험감독위원 3. 시험문제 보안, 4. 검정료
2.3. 민간자격 관리 자의 자격관리 운영 능력	2.3.1.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1. 관리 운영 조직, 2. 인력, 3. 시설·장비, 4. 재정, 5. 발전 계획, 6. 자격 발급 및 등록, 7. 사후관리

10) 2009년~2012년 동안 공인 민간자격 신청자 48.4%가 20대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초소양 자격이 많은 점수제 자격의 경우 중졸 이하가 22.5%를 차지함. 분류 불가를 고려한다면 전체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중졸 이하로 유추됨. 따라서 공인자격 상당수가 직업 활동 목적보다 스펙관리나 진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IV. 민간자격제도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관리자 및 신청자, 신청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현행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주일 간 실시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 가입된 기관 회원 4,8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기관 회원의 대부분은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 검정기관, 민간자격 등록 신청기관, 민간자격 등록 예정자들이다.

설문의 응답자 수는 998명(약 21%)이었으며, 조사결과는 엑셀 및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항목별 조사 결과표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로, 본 조사는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제도 방향성과 관련한 설문의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가. 민간자격 이해 관련 조사결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는 63.5%이며, 등록신청을 하거나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는 33.6%로 응답자 대다수가 민간자격 등록에 참여하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회원 중 현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10개 기관(73.4%)이다. 이 중 '취업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0%로 나타나 대부분이 취업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 또 '현재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9%로 향후에도 교육훈련은 점차 확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 4] 참조).

나. 민간자격 등록제도 조사결과

민간자격 등록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인식도 조사결과 문항 응답자 중 85.3%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등록신청 민간자격 관리자는 51.3%이며, 등록신청 의사가 있는 민간자격 관리자는 51.5%로 나타나 이미 등록되었거나 신청 의사가 있는 기관이 대체로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등록제도의 적절성 여부는 문항 응답자 대비 부정적 응답 비중이 14.7%인 반면, 64.1%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의 경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8.4%이며,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의 24.2%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의사가 있는 기관의 경우 사전등록제도 시행을 적절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셋째, 등록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문항 응답자 중 부분등록(규제될 필요가 있는 종목만 등록)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이며,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으로 응답한 비율이 27.6%로 조사되었다. 반면, 완전 민간자율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완전 민간자율보다는 부분등록이나 신고제로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을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선점이 1.6%, 등록을 통한 공신력 강화가 68.2%로 조사되었다. 민간자격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 또는 독점적 운영권한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등록하기보다는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향후 등록을 폐지하거나 검정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이 중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의 경우 1개 자격종목을 등록 폐지 또는 검정을 철회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9%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도 등록자격의 변동성은 매우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향후에 등록을 폐지 또는 검정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관의 재정적·관리적인 측면에 따른 내부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0%인 반면, 시장 수요, 제도의 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6%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요 등 시장성의 감소가 43.9%이며, 제도의 규제적인 측면은 13.7%로 나타나 자격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수요성과 제도의 규제적인 측면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조사결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인제도 인지여부 조사결과 문항 응답자의 59.9%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0%가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1.0%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12.3%와 등록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12.0%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등록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관리자는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문항 응답자의 32.5%가 전부 또는 일부 전환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54.1%가 계획은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은 아니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전환을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3.3%의 경우에는 '전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

셋째, '전환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의 미비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환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전환을 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응답 비율 중 21.4%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인제도의 공신력 확대 및 인식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국가공인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항 응답자의 8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조사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26.3%,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18.5%,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13.6%가 국가공인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국가공인제도 신청 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공인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와 등록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응답 비율 중 51.5%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간자격 관리자가 국가공인 신청에 있어서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국가공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항 응답자의 37.3%가 구체적인 공인신청 및 조사 절차,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또 공인신청 요건의 완화라고 응답한 비율도 33.8%로 조사되어 국가공인 신청 절차 및 요건에 대

한 개선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기관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40.4%,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35.0%가 ‘구체적인 공인신청 및 조사 절차,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등록 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40.4%가 ‘공인신청 요건의 완화’라고 응답하였다.

라. 기타 민간자격 운영부문 조사결과

기타 민간자격 운영부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검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희망사항을 조사한 결과 ‘우수 민간자격의 발굴 및 홍보’ 33.7%, ‘등록기관에 대한 컨설팅 또는 인센티브 확대’ 29.3%, ‘민간자격 부문의 시장자율성 확대’ 27.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자격 등록 과정 상 큰 불편 사항으로는 ‘등록의 지연’이 5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의 경우 72.9%가 등록의 지연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등록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경우 61.6%가 복잡한 서류가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의 경우도 53.3%가 등록의 지연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응답하여 현재 민간자격 관리자 대다수가 민간자격 등록 과정 상 등록 지연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기관회원 대다수가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다년간 검정기관에 대한 연수, 지도점검, 상담 등을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영업규제로 느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홍보수단이나 공신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민간자격 등록행위가 영업규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응답자의 상당수가 등록민간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긍정적 응답이 많을 것이라는 추론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등록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나, 사전등록에 대해서는 약한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상당수

가 등록보다는 신고나 부분등록, 사후등록 등의 방안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전 등록과 관련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등록지연, 복잡한 서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전등록된 민간자격을 추후에 폐지하거나 취소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많은 지도 점검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을 때 사전등록된 민간자격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물론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자체가 「자격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며, 본 조사에 응답한 기관 자체가 우호적 성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전등록된 자격종목 가운데 절반가량이 1회 검정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과장된 것이며, 본 조사결과처럼 대부분이 취소나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은 매우 과소 추정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최소 15%, 최대 50%의 범주 안에 있을 것이다. 사전등록 시행 전에는 민간자격 등록의 가파른 상승을 예상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는 빙산의 일각처럼 감추어진 시장이 큰 규모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며, 이 시장은 엄격한 범주의 자격증(certification)이 아닌 교육과 연계된 인증(accreditation)과 관련한 시장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 인증이 가진 속성상 교육의 단발성과 가변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성되고 있으나 폐지 및 취소가 쉽지 않은 현 제도(예: 등록기간, 일몰기간 등이 없음)의 구조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등록민간자격 규모는 지속적 팽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인제도의 경우, 상당수 검정기관이 공인요건 완화와 공인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희망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 공인신청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수의 검정기관이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인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검정(예정)기관의 상당수가 공인을 희망하지만, 실제 공인을 신청하거나 공인된 종목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실제 공인 가능성을 높이면서 변별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묘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공인자격과 국가자격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쉽게 심사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공인 문턱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민간자격 공인 제도가 질적인 활성화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정책제언 및 추진전략

1. 정책제언

1) 현행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의 중단기적 개선방안

민간자격의 등록제도가 실시된 후 민간자격의 피해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지는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금지분야에 대한 명확한 고지¹¹⁾

먼저 민원이 가장 많은 등록지연의 경우 부처 간에 업무조율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므로, 상당부분 등록지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등록지연이 금지분야와 관련된 경우 금지 여부의 판단이 불명확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다수 부처가 금지분야를 사전에 고시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민간자격검정기관이 사후적으로 신청함으로써 행정력 소모와 민원제기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나. 등록번호만 부여하는 방안

현행 등록제도는 까다로운 등록심사 규정이 없어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부록 2] 참조). 그러나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강한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자격검정기관이 인쇄되어 발급된 등록 증서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등록증서’가 아닌 ‘등록번호’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11) 금지분야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 금지분야 설정이 포괄적이면 부처의 설정 타당성이 저하되는데 이는 금지분야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근거 법령의 타당성을 의미함. 따라서 수많은 법령상의 금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현행법상의 금지분야에 명확한 고지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과 자문이 있었음.

다. 자격증과 인증서를 구분

자격증과 인증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에 해당할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의 경우 교육의 완성에 대한 증명증서이다. 현재 등록민간자격의 상당수는 사실상 배제기능이 없는 약식의 시험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증서이기에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중단기적 개선방안

가. 공인심사에 있어서 부처의 권한 및 책임 강화

현재 주무부처는 공인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의 심사나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 공인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주무부처의 경우,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민간자격이나, 시급히 인력을 양성·배출할 분야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자격의 필요성 및 활용도 관련 점수를 높이고, 심사위원이 아닌 개별부처가 점수를 주거나, 1차 접수된 자격종목 가운데 주무부처의 정식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민간자격의 공인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2015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 공인심사 기준의 정량적 평가 및 재공인 강화

공인심사 시 서류에 대한 심사위원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자격 취득자나 수험자 등의 만족도 또는 평가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평가를 도입할 경우, 기간 및 비용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관에 한정하여 실시하거나 재공인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¹²⁾ 또한 현재 재공인의 경우 최초 공인 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뤄지기에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그 심사과정이 내용적 측면보다 형식적 측면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정도, 자격취득자 업무능력, 사후관리 등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공인을 보다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12) 이 방안은 사전적 예산확보와 공인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최소 2016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 공인심사 기준의 조정

기존의 공인심사 기준은 민간자격검정기관의 관리능력과 검정관련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무범위가 협소하거나 교양자격의 공인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각기 점수를 부여할 경우 평가적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별성도 떨어진다. 또한 세부 평가항목이 복잡할 경우 심사자 간에 의견충돌, 이의제기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과 배점을 간소화해야 한다. 형식적 서류평가는 완화하고, 실질적인 운영목적이나 필요성, 시장평가 등의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정기준을 <표 5-1>과 같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5-1> 현행 민간자격 심사 및 평가기준 개선방안

영역	항목	조사방법		세부 평가항목	조정방안
		서류조사	현장조사		
2.1.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자격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	○	2.1.1.1. 운영 목적	배점강화 주무부처 참여강화
				2.1.1.2. 자격의 활용도	
	2.1.2. 자격체계의 적합성	○	○	2.1.2.1. 검정 기준	현장조사 배점강화
				2.1.2.2. 검정 방법	
2.1.2.3. 검정 과목					
2.1.2.4. 응시 자격					
2.2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검정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	○	2.2.1.1. 출제기준	만족도 조사 (문제 적절성, 채점 등) (채점 관련 배점)
				2.2.1.2. 문제의 적절성	
				2.2.1.3. 출제절차 및 보안	
				2.2.1.4. 채점기준 및 절차	
				2.2.1.5. 채점관리	
2.2.2. 검정시행의 적합성	○	○	2.2.2.1. 검정계획·실행절차	만족도 조사 추가 (검정 시행, 검정료, 수수료 원가 계산 등의 삭제)	
			2.2.2.2. 시험감독위원		
			2.2.2.3. 시험문제 보안		
			2.2.2.4. 검정료		
2.3.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기관분야)	2.3.1.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	○	2.3.1.1. 관리 운영 조직	배점 축소 (발전 계획 등은 삭제) 만족도 조사 추가 (관리 운영, 사후 관리)
				2.3.1.2. 인력	
				2.3.1.3. 시설·장비	
				2.3.1.4. 재정	
				2.3.1.5. 발전 계획	
				2.3.1.6. 자격 발급 및 등록	
				2.3.1.7. 사후관리	

2. 향후 추진전략 및 과제

자격 시장의 건전한 육성, 민간자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평생 직업능력 향상, 그리고 국민권익을 위하여 향후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와 강도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분야, 직업 및 소양자격, 자격검정, 교육인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종목의 현황([그림 3-1]참조)을 면밀히 분석·파악한 후,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 개입을 실시하고, 시장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장자율성을 강화하며, 각 영역 구분을 구체화하고, 정부개입의 방법 및 강도를 달리하는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만이 검정 주체가 되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양자는 국가만이 검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개별법에서도 다수의 금지분야가 존재한다. 이 경우 직업 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지규정의 경우, 금지범위를 명확히 규정 및 고시하여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분야에 대한 판단 혼선으로 등록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지분야 범위와 실효성 및 사전등록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금지분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자격 등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고 사전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효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인 대상을 직업자격으로 제한하고, 기초소양 자격을 배제하는 방안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자격취득자 및 응시자 기준으로 볼 때, 직업자격보다는 기초소양 자격의 양적 팽창이 더 빠르다. 따라서 공인된 자격증에 대한 효용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공인 대상을 직업자격으로 제한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자격을 포함한 자격제도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자격종목 실태조사 또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득자를 대상으로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파악한 실증분석은 사실상 부재하여, 자격의 효용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격의 효용성 파악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또는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해 거시적 측면의 자격제도 실효성을 분석하고, 미시적 측면의 개별 종목에 효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인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자격정보 수집·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덕기·김상진·박종성(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김덕기·김상진·김민혜(2012).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 운영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김덕기·김미숙·김상진·김상호·김현수·이동임·정향진·조정윤·오혁제(2012). 『민간 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김덕기·김현수·이영란·강정은(2008). 『국가기술허자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주인중·이동임·김미숙·조정윤·김현수·김덕기·정향진·김상진·김상호·오혁제·이유진(2013).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김덕기·김상진·김상호·오혁제·이동임·이유진·주인중·최영렬·한상근(2014). 『민간 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용철(2002).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동임·김현수·이유진·조현혜(2013). 『2013 공인민간자격 통계연보』.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우(2002).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세창출판사.
- 이정표·김영효·윤위석(2007). 『민간자격등록제 시행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임동진(2014). 『민간 등록규제에 관한 실익 분석』. 순천향대학교
- 최영렬·김미숙·정인수(2011).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Jerald A. Jacobs & Jefferson C. Glassie(2004).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Law Handbook Second Edition』. 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 Washington, DC.
- Morris M. Kleiner(2006). 『Licensing Occupations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Kalamazoo, Michigan.
- 阿形 健司(1998). 『職業資格の效果分析の試み』. 教育社会学研究第63集: 177-197.
- 阿形 健司(2010). 『職業資格の効用をどう捉えるか』. 日本労働研究雑誌, 特集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労働市場 No.594: 20-27.

西村 公子·松本 真作·鎌倉 哲史·吉田 修·佐藤 舞·岩脇 千裕·阿形 健司·松本 純平(2010).
『我が.における職業に.する資格の分析 -Web 免許資格調査から- (第1分冊)』.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21-1.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indexMain.do>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Registered Private Certifications and Accredited Private Certifications

Sang-Ho Kim · Hyug-Je Oh

In 2000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was enacted based on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in 2008, the registr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was started, and this year the pre-registration system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to propose a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roposes some improvement plans and alternatives.

Firstly, official notification of the prohibition field by government ministry in advance and distribution only register numbers to institutions in the pre- registration system is needed.

Secondly, to improve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government ministry in authorizing, building up quantitative analysis index and adjusting judgment standard from a long-term strategy viewpoint

Furthermor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stricting the authorized qualification as vocational qualifications and excluding the basic literacy qualifications out of the authorized qualification is urgently needed.

Finally, we need further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building of panel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부 록]

[부록 1] 민간자격 규제 관련 민원 및 건의 내용

구분	건수	건의 제목	비고
정부포털의 민간자격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	9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설하기로 해 놓고 지지 부진한 것을 기존에 민간자격인 저작권관리사를 국가 공인화와 함께 면허자격으로 전문화 자격을 규제하여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자격등록 업무지연	
		민간자격이 존재하는데 국가자격 신설로 초토화	
		장애아동 발달재활 민간자격 소지자 불인정 규제	
		민간자격 강제 등록 후 세금 징수, 기존 등록자들 안내 없이 세금 징수	
		사전안내 절차 없는 민간자격 면허세	
		민간자격 강제등록 후 세금부과 규제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 말살지침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자격 장애아동 발달 재활 제공 인력 1년 후 불인정	
중소·상공인 ‘손톱 밀 가시’ 건의 사례	1건	「네일 솥」을 창업하는데, 헤어 자격증 왜 필요하나요?	
규제개혁위원회 민원	2건	발달재활 제공인력에 대한 민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2014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됨.

[부록 2]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면허의 성격과 내용

규제의 종류	규제적 성격과 내용
①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이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규제수단 ■ 행정청이 부득이하게 행정목적상 사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급적 완화된 규제수단인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의 침해를 보다 최소화함 ■ 허가·등록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사인의 영업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음 ■ 신고제 가운데서도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이른바 ‘자기 완결적 신고’가 그 원칙적인 형태임.
②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 ■ 행정청의 등록행위에 의하여 공부에 기재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는 공적 증거력이 부여되게 되며 공증의 법적 성질 그대로 요건을 갖춘 이상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 ■ 소유관계 혹은 일정한 권한이나 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한 사업이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사무소나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를 등록하는 경우, 특정한 영업 또는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됨. <p><예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록, 주민 등록, 약국 개설 등록 등</p>
③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하여 규제기관의 승인이 개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이 개인의 법률행위에 승인을 부과하여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을 의미 ■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상이한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짐 <p><예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p>
④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규제기관이 해제하여 개인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임. ■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임. ■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의 대상임. <p><예시> 수출입의 허가, 외국환 업무의 허가, 보험업의 허가 등</p>
⑤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입수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의 실수가 커다란 비용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임. ■ 면허를 통한 규제의 목적은 국민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회에 미치는 외부비용효과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임. ■ 면허를 발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업종 또는 직종의 복잡성, 정보 해득의 난이도, 잠재적 피해의 규모, 외부비용효과의 가능성 등임 ■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법정면허는 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임.

* 출처 : 임동진(2014), 『민간 등록규제에 관한 실의 분석』, 순천향대학교

[부록 3]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2014. 10. 8. 기준)

주무부장관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국가보훈처	1 (0.01)	-
방송통신위원회	1 (0.01)	-
식품의약품안전처	49 (0.42)	-
공정거래위원회	5 (0.04)	-
금융위원회	48 (0.41)	7 (7.36)
기획재정부	55 (0.47)	8 (8.42)
미래창조과학부	132 (1.14)	19 (20.00)
교육부	3,842 (33.22)	28 (29.47)
외교부	1 (0.01)	-
통일부	5 (0.04)	-
법무부	11 (0.09)	1 (1.05)
국방부	2 (0.01)	-
안전행정부	29 (0.25)	3 (3.15)
문화체육관광부	3,286 (28.41)	5 (5.26)
농림축산식품부	531 (4.59)	1 (1.05)
산업통상자원부	687 (5.94)	8 (8.42)
보건복지부	1,848 (15.97)	3 (3.15)
환경부	46 (0.39)	-
고용노동부	342 (2.95)	4 (4.21)
여성가족부	305 (2.63)	-
국토교통부	80 (0.69)	1 (1.05)
해양수산부	14 (0.12)	-
국세청	6 (0.05)	-
관세청	3 (0.02)	1 (1.05)
조달청	11 (0.09)	-
통계청	1 (0.01)	-
경찰청	67 (0.57)	3 (3.15)
소방방재청	8 (0.06)	-
문화재청	20 (0.17)	-
농촌진흥청	10 (0.08)	-
산림청	34 (0.29)	3 (3.15)
중소기업청	17 (0.14)	-
특허청	14 (0.12)	-
해양경찰청	54 (0.46)	-
34개 부처·청위원회	11,565개 종목*	95개 종목

*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민간자격 수는 공인민간자격 수를 포함함.

※ 소관부처가 미확정된 종목을 포함한 등록 현황임.

[부록 4] 민간자격 공인 및 등록관련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부표 1> 민간자격 등록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전혀 모른다	2 (0.9)	0 (0.0)	1 (0.2)	2 (5.6)	5 (0.5)
잘 모른다	11 (4.8)	6 (5.9)	3 (0.5)	1 (2.8)	21 (2.1)
보통이다	27 (11.8)	20 (19.8)	64 (10.3)	8 (22.2)	119 (12.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7 (51.3)	52 (51.5)	246 (39.7)	16 (44.4)	431 (43.8)
매우 잘 알고 있다	71 (31.1)	23 (22.8)	305 (49.3)	9 (25.0)	408 (41.5)
전체	228 (100)	101 (100)	619 (100)	36 (100)	984 (100)

* $\chi^2=86.291$, $p=0.000$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2> 사전등록제도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매우 적절하지 않다	12 (5.3)	12 (11.9)	32 (5.2)	4 (11.1)	60 (6.1)
적절하지 않다	15 (6.7)	9 (8.9)	55 (8.9)	5 (13.9)	84 (8.6)
보통이다	46 (20.4)	32 (31.7)	120 (19.4)	10 (27.8)	208 (21.2)
적절하다	109 (48.4)	43 (42.6)	262 (42.3)	13 (36.1)	427 (43.5)
매우 적절하다	43 (19.1)	5 (5.0)	150 (24.2)	4 (11.1)	202 (20.6)
전체	225 (100)	101 (100)	619 (100)	36 (100)	981 (100)

* $\chi^2=48.853$, $p=0.000$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3> 적절한 제도변화의 방향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	69 (31.7)	31 (32.0)	143 (25.0)	10 (32.3)	253 (27.6)
사전등록을 폐지 후 사후 등록 실시	15 (6.9)	7 (7.2)	67 (11.7)	3 (9.7)	92 (10.0)
부분등록	110 (50.5)	42 (43.3)	236 (41.3)	11 (35.5)	399 (43.5)
완전 민간자율	5 (2.3)	11 (11.3)	32 (5.6)	4 (12.9)	52 (5.7)
기타	19 (8.7)	6 (6.2)	93 (16.3)	3 (9.7)	121 (13.2)
전체	218 (100)	97 (100)	571 (100)	31 (100)	917 (100)

* $\chi^2=44.324$, $p=0.000$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4> 민간자격 등록 이유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사전등록을 위한 시장선점	5 (2.2)	2 (2.0)	8 (1.3)	1 (2.9)	16 (1.6)
등록을 통한 공신력 강화	156 (68.4)	57 (57.6)	431 (70.0)	22 (64.7)	666 (68.2)
수강생이 등록을 희망하므로	17 (7.5)	13 (13.1)	18 (2.9)	2 (5.9)	50 (5.1)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49 (21.5)	26 (26.3)	153 (24.8)	9 (26.5)	237 (24.0)
기타	1 (0.4)	1 (1.0)	6 (1.0)	0 (0.0)	8 (0.8)
전체	228 (100)	99 (100)	616 (100)	34 (100)	977 (100)

* $\chi^2=25.931$, $p=0.011$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5〉 신청 및 등록 자격의 폐지 및 철회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3개 이상 자격종목	5 (2.2)	5 (5.4)	22 (3.6)	5 (14.3)	37 (3.8)
1~3개 자격종목 이상	8 (3.6)	5 (5.4)	31 (5.1)	1 (2.9)	45 (4.7)
1개 자격종목	4 (1.8)	5 (5.4)	36 (5.9)	1 (2.9)	46 (4.8)
없음	208 (92.4)	78 (83.9)	521 (85.4)	28 (80.0)	835 (86.7)
전체	225 (100)	93 (100)	610 (100)	35 (100)	963 (100)

* $\chi^2=20.728$, $p=0.014$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6〉 신청 및 등록 자격의 폐지 및 철회 이유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수요 등 시장성의 감소	63 (40.6)	31 (43.1)	187 (45.6)	8 (38.1)	289 (43.9)
기관의 재정적 측면	8 (5.2)	1 (1.4)	25 (6.1)	0 (0.0)	34 (5.2)
기관의 관리적 측면	19 (12.3)	9 (12.5)	33 (8.0)	4 (19.0)	65 (9.9)
제도의 규제적 측면	20 (12.9)	17 (23.6)	49 (12.0)	4 (19.0)	90 (13.7)
기타	45 (29.0)	14 (19.4)	116 (28.3)	5 (23.8)	180 (27.4)
전체	155 (100)	72 (100)	410 (100)	21 (100)	658 (100)

* $\chi^2=17.780$, $p=0.123$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7>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전혀 모른다	4 (1.8)	1 (1.0)	5 (0.8)	0 (0.0)	10 (1.0)
잘 모른다	28 (12.3)	12 (12.0)	62 (10.0)	6 (18.2)	108 (11.0)
보통이다	53 (23.3)	35 (35.0)	177 (28.6)	10 (30.3)	275 (28.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3 (41.0)	31 (31.0)	240 (38.8)	14 (42.4)	378 (38.7)
매우 잘 알고 있다	49 (21.6)	21 (21.0)	134 (21.7)	3 (9.1)	207 (21.2)
전체	227 (100)	100 (100)	618 (100)	33 (100)	978 (100)

* $\chi^2=12.314$, $p=0.421$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8> 국가공인으로 전환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전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며, 현재 추진 중이다	43 (19.0)	17 (17.7)	104 (16.9)	9 (26.5)	173 (17.8)
일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며, 현재 추진 중이다	35 (15.5)	12 (12.5)	93 (15.1)	3 (8.8)	143 (14.7)
전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나, 현재 추진 중이 아니다	60 (26.5)	23 (24.0)	136 (22.1)	4 (11.8)	223 (23.0)
일부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나 현재 추진 중이 아니다	61 (27.0)	31 (32.3)	200 (32.6)	10 (29.4)	302 (31.1)
전환할 생각이 없다	27 (11.9)	13 (13.5)	81 (13.2)	8 (23.5)	129 (13.3)
전체	226 (100)	96 (100)	614 (100)	34 (100)	970 (100)

* $\chi^2=11.228$, $p=0.509$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9〉 국가공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38 (23.5)	17 (25.4)	62 (15.5)	3 (11.5)	120 (18.3)
관리·운영 능력의 부족	24 (14.8)	12 (17.9)	63 (15.7)	8 (30.8)	107 (16.3)
신청요건의 미비	29 (17.9)	18 (26.9)	107 (26.7)	3 (11.5)	157 (23.9)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3 (20.4)	14 (20.9)	86 (21.4)	6 (23.1)	139 (21.2)
기타	38 (23.5)	6 (9.0)	83 (20.7)	6 (23.1)	133 (20.3)
전체	162 (100)	67 (100)	401 (100)	26 (100)	656 (100)

* $\chi^2=21.281$, $p=0.046$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0〉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예	191 (86.4)	73 (73.7)	497 (81.5)	19 (61.3)	780 (81.2)
아니요	30 (13.6)	26 (26.3)	113 (18.5)	12 (38.7)	181 (18.8)
전체	221 (100)	99 (100)	610 (100)	31 (100)	961 (100)

* $\chi^2=15.622$, $p=0.001$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1> 국가공인제도 신청에 있어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공인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	37 (16.5)	17 (16.8)	128 (21.0)	6 (17.6)	188 (19.4)
공인신청에 필요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	79 (35.3)	52 (51.5)	314 (51.5)	16 (47.1)	461 (47.6)
공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종목의 높은 수준	34 (15.2)	12 (11.9)	70 (11.5)	3 (8.8)	119 (12.3)
신청인이 절차진행 상태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	61 (27.2)	16 (15.8)	79 (13.0)	6 (17.6)	162 (16.7)
기타	13 (5.8)	4 (4.0)	19 (3.1)	3 (8.8)	39 (4.0)
전체	224 (100)	101 (100)	610 (100)	34 (100)	969 (100)

* $\chi^2=38.768$, $p=0.000$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2> 국가공인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구체적인 공인신청 및 조사절차, 조사내용 등에 대한 정보	91 (40.4)	39 (39.4)	213 (35.0)	17 (53.1)	360 (37.3)
공인신청 요건의 완화	71 (31.6)	40 (40.4)	207 (34.0)	8 (25.0)	326 (33.8)
공인 대상 수준의 하향화	10 (4.4)	3 (3.0)	35 (5.7)	1 (3.1)	49 (5.1)
컨설팅 등의 지원	46 (20.4)	16 (16.2)	138 (22.7)	3 (9.4)	203 (21.0)
기타	7 (3.1)	1 (1.0)	16 (2.6)	3 (9.4)	27 (2.8)
전체	225 (100)	99 (100)	609 (100)	32 (100)	965 (100)

* $\chi^2=18.078$, $p=0.113$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3〉 민간자격 검정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희망사항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민간자격 부문의 시장자유성 확대	51 (22.9)	36 (36.7)	173 (28.3)	7 (20.6)	267 (27.6)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	15 (6.7)	9 (9.2)	41 (6.7)	7 (20.6)	72 (7.4)
등록기관에 대한 컨설팅 또는 인센티브 확대	62 (27.8)	25 (25.5)	189 (30.9)	7 (20.6)	283 (29.3)
우수 민간자격의 발굴 및 홍보	92 (41.3)	27 (27.6)	196 (32.0)	11 (32.4)	326 (33.7)
기타	3 (1.3)	1 (1.0)	13 (2.1)	2 (5.9)	19 (2.0)
전체	223 (100)	98 (100)	612 (100)	34 (100)	967 (100)

* $\chi^2=25.445$, $p=0.013$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4〉 민간자격 등록과정의 불편사항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등록의 지연	164 (72.9)	23 (23.2)	319 (53.3)	10 (29.4)	516 (53.9)
복잡한 서류	45 (20.0)	61 (61.6)	196 (32.7)	17 (50.0)	319 (33.3)
심사비용의 부담	2 (0.9)	4 (4.0)	6 (1.0)	1 (2.9)	13 (1.4)
정보시스템 처리	10 (4.4)	9 (9.1)	48 (8.0)	4 (11.8)	71 (7.4)
기타	4 (1.8)	2 (2.0)	30 (5.0)	2 (5.9)	38 (4.0)
전체	225 (100)	99 (100)	599 (100)	34 (100)	957 (100)

* $\chi^2=91.415$, $p=0.000$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15> 기관회원의 교육훈련 시행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 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기타	전체
취업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123 (54.7)	44 (44.0)	333 (54.6)	13 (39.4)	513 (53.0)
교양 및 흥미 차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33 (14.7)	20 (20.0)	137 (22.5)	7 (21.2)	197 (20.4)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예정임.	46 (20.4)	18 (18.0)	84 (13.8)	6 (18.2)	154 (15.9)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정도 없음.	0 (0.0)	3 (3.0)	12 (2.0)	1 (3.0)	16 (1.7)
해당 없음.	23 (10.2)	15 (15.0)	44 (7.2)	6 (18.2)	88 (9.1)
전체	225 (100)	100 (100)	610 (100)	33 (100)	968 (100)

* $\chi^2=28.141$, $p=0.005$

**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록 5] 규제의 종류에 따른 규제별 내용

규제의 종류	규제별 구체적 내용
사전승인규제(PA)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기타 1
투입기준규제(IS)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 2
산출기준규제(OS)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법, 행정형벌, 고용의무, 기준설정, 기타 3
정보규제(IR)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타 4

[부록 6] 민간자격 관련제도 설문지

민간자격 관련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민간자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총리실 산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제도가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관한 의견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사의 목적을 널리 이해하시고 올바른 민간자격 제도를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민간자격 등록제도 (1 ~ 6)

1. 민간자격 등록제도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들어본 적 없음)
- ② 잘 모른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
- ③ 보통이다.(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음)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대부분 이해하고 있음)

2. 민간자격 발급 및 운영하기 전에 등록하는 제도(사전등록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사전등록제도 : 민간자격의 발급 및 관리·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이 사전에 등록을 한 이후에 민간자격의 발급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 ② 적절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3. 만약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
- ② 사전등록을 폐지 후 사후 등록 실시
- ③ 부분등록(규제될 필요가 있는 종목만 등록)
- ④ 완전 민간자유
- ⑤ 기타

4. 귀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종목을 등록하려는 이유는?

- ① 사전등록을 위한 시장선점
- ② 등록을 통한 공신력 강화
- ③ 수강생이 등록을 희망하므로
- ④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 ⑤ 기타

5. 등록 신청한 또는 등록된 자격 중 향후 폐지하거나 검정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 ① 3개 이상 자격종목
- ② 1 ~ 3개 자격종목 이상
- ③ 1 개 자격종목
- ④ 없음

6. 등록 신청한 또는 등록된 자격 중 만일 향후 폐지하거나 검정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요 등 시장성의 감소
- ② 기관의 재정적 측면
- ③ 기관의 관리적 측면
- ④ 제도의 규제적 측면
- ⑤ 기타

B.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 (7 ~ 12)

7.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들어본 적 없음)
- ② 잘 모른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
- ③ 보통이다.(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음)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대부분 이해하고 있음)

8.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록 민간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전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며 현재 추진 중이다.
- ② 일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며 현재 추진 중이다.
- ③ 전부에 대해 전환하려고 하나 현재 추진 중이 아니다.
- ④ 일부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나 현재 추진 중이 아니다.
- ⑤ 전환할 생각이 없다.

9. 현재 운영 중인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관리운영능력의 부족
- ③ 신청요건의 미비
-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⑤ 기타

10.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현행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 신청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인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② 공인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신청자격 및 서류 등)
- ③ 공인대상으로 선정되는 종목의 높은 수준
- ④ 신청인이 절차진행상태(신청 이후 과정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
- ⑤ 기타

12. 현행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체적인 공인 신청 및 조사절차, 조사내용 등에 대한 정보
- ② 공인신청요건의 완화
- ③ 공인대상 수준의 하향화
- ④ 컨설팅 등의 지원
- ⑤ 기타

C. 기타 민간자격 운영부문 (13 ~ 15)

13. 민간자격 검정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희망사항은?

- ① 민간자격부문의 시장자율성 확대
- ②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
- ③ 등록기관에 대한 컨설팅 또는 인센티브 확대
- ④ 우수 민간자격의 발굴 및 홍보
- ⑤ 기타

14. 민간자격 등록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등록의 지연
- ② 복잡한 서류
- ③ 심사비용의 부담
- ④ 정보시스템 처리
- ⑤ 기타

15. 기타 향후 민간자격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설문에서 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6. 현재 답변자가 기관회원이라면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① 취업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② 교양 및 흥미차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③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예정임.
- ④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정도 없음.
- ⑤ 해당 없음

17. 마지막으로 답변자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자
- ② 등록을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자
- ③ 등록을 신청하려는 민간자격 관리자
- ④ 민간 자격 관계자(부처 관계자 등)
- ⑤ 기타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향후 민간자격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 저자 약력

- 김상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오혁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14년 11월 08일 인쇄
 2014년 11월 10일 발행
- 발 행 인 이 용 순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7008-016-9 93300
- 인 쇄 처 (주)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2)2683-0955